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 주요 개정 내용안내



○ 고 시 : 제2011-151호
공포일자 : 2011. 07. 27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협회(www.keea.or.kr)

○ 주요내용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및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으로 명문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11. 4. 6)개정 *에 따른 후속조치)

* 법제처 법률해석(안건번호 09-105, '09. 05. 06)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시·도지사의 확인 받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된 설계사, 설계보조자,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

→ 이에 따라 설계감리업무의 품질확보와 전문성강화를 위하여 설계감리원의 자격요건을 고급기술자 및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강화시킴

설계감리원의 업무 중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업무범위 명확화)

○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내용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설계감리원”이란 설계감리자에 소속하여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 ----- 6. ----- -----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상인 사람-----
제4조(설계감리원의 업무) 설계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범위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성과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생략)	제4조(설계감리원의 업무) ----- ----- -----업무----- ----- 1.~7. (현행과 같음)
제5조(발주자,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의 기본임무) ① (생략) 가.~마. (생략) 바. 특수공법 등 주요 공종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별도 조치</u>	제5조(발주자, 설계감리원 및 설계자의 기본임무) ① (현행과 같음). 가.~마. (현행과 같음) 바. ----- -----설계감리원 등 과 협의 조치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입법 및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내



- 법 률 : 제10957호
공포일자 : 2011. 7. 25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02-2110-5475)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제안이유
제301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도록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발주자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현행의 전기공사와 같이 다른 시설공사업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대비표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0493호, 2011.3.30, 일부개정]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10957호, 2011.7.2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생략) <신설> <신설>	제2조(정의) ----- ----- 1.~9. (현행과 같음)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생략) <신설>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1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신설> 5.~8. (생략)	제43조(벌칙) ----- ----- 1.~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1항을 ----- ----- 4의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5.~8. (현행과 같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 률 : 제2011-185호**
예고기간 : 2011. 7. 22 ~ 8. 11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02-2110-7278)
전문참고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개정 이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편성·운영 내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의 주요 인프라인 '교육·훈련' 과 '자격' 의 상호연계를 강화하여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 자격증의 대여 알선 및 불법 대여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자격증의 불법적인 활용을 근절하고자 함

○ **주요 골자**

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13조)

- 1) 현행법은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는 자에 한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현장의 교육·훈련 과정과 자격 검정이 상호 괴리되어 수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의 주요한 인프라인 '교육·훈련' 과 '자격' 의 기준이 달라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이 발생함
- 2) 주무부장관이 평가·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검정을 시행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과정 이수 후 자격 부여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개별 교육·훈련과정의 편성·운영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훈련' 과 '자격제도' 의 상호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일-교육·훈련-자격' 연계체계 구축 및 국가 전체적인 직업능력개발의 체계화·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 제한(안 제11조의2)

- 1)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제한 사유에 준하여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취득하게 되는 자격종목과 동일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이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해당교육·훈련과정의 이수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2) 국가기술자격의 부정한 취득·활용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의 위탁(안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의2)

- 1)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 등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 현장성·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24조의4, 25조의4, 제26조의2)

-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과정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교육·훈련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조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

- 동부장관 등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와 교육·훈련과정 평가 및 지정, 운영 관련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는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300만원 이하)하는 규정을 신설함
- 2)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격취득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지정 취소(안 제24조의5)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해당 과정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함
- 2)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지정을 방지하고, 지정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상정(안 제6조, 제22조)

- 1)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교육·훈련과정의 평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2)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부처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 대상 기관에 대한 수수료 부과(제22조)

- 1) 현행 규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재발급', '국가기술자격 관련 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검정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통해서도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3) 관련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평가·지정업무' 등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게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국가기술자격 자격정지 대상자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17조)

- 1) 현행 규정은 '국가기술자격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부재함
- 2)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도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 절차에 준해서 청문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23조제6항)

- 1)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 및 자격 미취득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는 취득 자격의 불법대여 등을 근절할 필요함
- 2) 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자,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자 함
- 3) 행정력의 한계를 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적인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불법 대여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이 제고되고, 자격의 건전한 활용문화 정착 및 활용촉진 등이 기대됨차. 법률체계 및 자구 정비(안 제24조의5)
- 4) 검정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가능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검정응시자격 등 검정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의 조항에 통합하여 법률체계 정비하고, 민간 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시 검정 수준 이외에 '교육·훈련과정 이수' 기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규정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

협회 대응계획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고자 도입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신설(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11-180호**
예고기간 : 2011. 7. 15 ~ 8. 4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02-2110-7278)
전문참고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해 검정업무를 수탁 받은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종목으로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종목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자격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현행시행령 시행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 골자**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 면제기간 제한(안 제16조)

1)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검정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면제기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어 자격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검정과목을 면제함으로써 현장의 직무 및 지식의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예시 1) '84년 '전파통신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현재도 '무선설비기사' 종목의 검정과목과 중복되는 '무선통신기기', '안테나공학'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예시 2) 소방관계법규 등 법규 과목은 과목명은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격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

2) 국가기술자격 검정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기간,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기간 등을 준용하여 중복 검정과목 등에 대한 검정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되, 2년간 자격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의 시험 면제기간 :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되,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험을 1회 면제

3) 국가기술자격 검정 면제제도 운영 시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직무수요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재위탁 근거 마련(안 제29조)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검정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의 자격검정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수탁업무 중 단순 반복적인 집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등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검정업무를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2)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수탁기관이 수탁 업무 중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자격에 대한현장의 수요파악, 자격검정 출제기준 및 종목정비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을 보다 효율화하고, 자격의 현장성 및 질 제고가 기대됨

다. 신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기준 등 규정(별표1, 별표3, 별표5)

1)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종목이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자격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시행령 시행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11-81호

예고기간 : 2011. 7. 15 ~ 8. 4

담당부서 : 직업능력평가과(02-2110-7278)

전문참고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에서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시행규칙 시행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안 별표2, 별표5,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7)

1)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등 10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임베디드기사, 국제진료코디네이터, 방수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나. '검정 관리·운영규정' 상 규정사항 추가(안 제40조)

1) 검정수탁 기관이 수탁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검정 관리·운영규정' 상에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도 규정하도록 함

2) 검정 시행·관리업무의 재위탁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의 효율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다. 검정업무의 일부 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납부규정 신설(안 제36조)

1)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검정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한 경우 재수탁 기관에도 검정 관련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기타 개정사항(안 별표3, 별표7, 별표8, 별표9)

1) '건축설비기사' 등 일부 종목의 시험과목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방산보안기능사', '측량기능사', '기상감정기사' 종목의 시험방법을 '복합형' 에서 '작업형' 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규정표와 '유사 직무분야' 규정표 등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협회 대응계획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등 전력산업분야별로 자격종목이 신설되는 정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 령 : 제2011-671호
 예고기간 : 2011. 7. 19 ~ 8. 8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장(02-2110-8394)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itm.go.kr)

○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기타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1·2종 시설물의 범위조정(영 제2조, 별표1 개정)

- 「시특법」대상 중 일부시설물의 1·2종 구분 명확화
- 방조제(조력발전소 포함)를 「시특법」대상 1·2종 신설

나. 정밀안전진단 대상 법체제 정비(영 제9조 개정)

-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의 요건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조정(영 제10조 개정)

- 항만의 말뚝계류시설과 4대강사업의 다기능 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로 분류하여 국가중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강화
- 방조제는 법적 근거 및 설치 목적에서 하구둑과 차이는 있으나 그 기능과 중요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방조제 추가

라. 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규정정비(영 제11조, 제27조 개정)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시·도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지방이양사무로 규정 정비

마.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합병 등 정비(규칙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또는 합병시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 등 실적승계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글 _ 박기동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민해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선거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해(濟濟)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02-595-9191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중지로 인한 수급인의 계약해지로 인한 공사정지기간 동안의 추가비용발생,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이자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공사정지로 인하여 공기의 연장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증가되는 공사비는 수급인이 지출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 일수 매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해 산출한 이자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공사가 정지되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계산한 이자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손해배상금의 청구에 대하여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거나, 도급인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 경우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때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완성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이라 판시 하였다. ❖

전력기술관리법령 유권해석(지식경제부) 사례

1

- 주택건설공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상주감리원이 소방감리원(주인력이 아닌 보조인력)으로 등재만 되어 있고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소방상주 및 소방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상주감리원이 전기감리원으로 소방감리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

- 저는 지자체 공업직(전기직류) 공무원이며 전기공사기사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전력시설물 설계는 기술사가 원칙이고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전력시설물 설계는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자체의 전기공사 중 소용량 공사(5KW미만 신설공사, 단순유지보수공사 등)를 설계(공사비 내역, 시방서, 도면설계 등)하려면 설계사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기관련 기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 면허 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5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 제4호에 따라 전기감리업의 기술인력(전기감리원)과 소방감리업의 기술인력(소방감리원)은 서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 PQ평가시 전기상주감리원이 소방감리업의 기술인력(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9. 12. 18)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따른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설계사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1. 8)

3 지지체를 통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있어서 참여감리원이 공고일 기준으로 타 용역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 해당 공사현장의 감리자 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나, 1차 제출 시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제출받아 적격처리 할 수 있는지?

- PQ고시 제10조의3제2항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감리업자는 모집공고시 제시된 기간 내에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의 제출기한 내에 1차로 서류제출을 한 이후 이를 수정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한 경우라도 적격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입찰자가 기 제출한 심사서류를 서류제출기한(마감기한) 내에 보완, 수정하거나 동 서류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출할 수 있으며,
- 입찰자가 서류제출기한(마감기한) 내에 전에 제출했던 심사서류를 취소하고 새로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새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1. 1)

4 지지체를 통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제출서류에 대한 열람대상 및 항목 중 ③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은 '해당 감리원의 경력확인서에 등재된 최근 1년간의 경력'으로 열람되고 있으나

- 경력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경력확인서에 등재된 최근 현황은 실제의 경력 및 배치 현황과는 대부분 불일치하므로 해당 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및 배치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는 반면
- 배치신고는 의무사항이므로 배치신고된 것은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에 반드시 나타남에 따라 공고일 기준 타 현장에 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최근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바
- 열람서류에 대한 열람대상항목 중 '③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대신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열람대상항목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PQ고시 제10조의3제7항에서 시·도지사는 사실조회기간 중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등을 다른 감리업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항목과 함께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범위로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확인을 위해 정한 것입니다.

- 또한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 빈도는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자료, 시·도지사의 통보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회는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발급하고 평가서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열람대상항목 변경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고시 개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다른 법령의 개정수요, 감리업계 및 시·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10. 1. 1)